

## 뉴스 요약

1.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 온라인 출원 오픈, 국제등록출원 전과정의 전산화 실현
2.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행정과 미성년자 형사사건 집중관할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 7 월 1 일부터 시행
3. 국가지식재산권국 일부 특허요금의 징수중지 및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 8 월 1 일부터 시행
4. 2018 년 상반기 시장감독관리 업무 현저한 성과 획득

### 마드리드 시스템이 중국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 온라인 출원 시스템 오픈

6 월 21 일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 온라인 출원 시스템이 대중들에게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이로써 중국 현행 상표법과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국제등록출원 전과정의 전산화를 순조롭게 실현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출원제출, 관련 서류 전자 송달, 보정통지서 답변서 온라인 제출, 관납료 온라인 납부, 국제사무국와의 전자통신 실현 등 전과정을 포함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상표국에서 자체개발한 것으로 시스템의 오픈은 출원인의 국제등록출원에 편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감소시켜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기업상표 해외진출의 보호효율을 진일보 제고시켰다.

최근 2 년간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상표의 해외배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표국은 마드리드국제등록을 상표 중점업무중 하나로 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상표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2017 년 우리 나라 출원인이 제출한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은 4810 건에 도달하여 이는 전년 대비 59.6% 증가하였으며, 마드리드연맹에서 3 위를 차지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고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되었다.

##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기층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행정사건과 미성년자 형사사건 집중관할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지식재산권사건의 일부 발취)

6월 29일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행정과 미성년자 형사사건 집중관할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주로 2개 집중관할 기층법원-황푸구(黄浦区)법원과 민항구(闵行区)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권을 감소시켰다.

### 지식재산권 사건

#### (1) 상해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민사, 행정, 형사 “삼합일(三合一)” 심판체제 실행

그중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기술계약서, 영업비밀, 식물신품종과 집적회로배치설계 등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 독점, 독점판매계약 등 민사분쟁 사건이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및 가짜 불량 상품의 생산판매 등에 대하여 내린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분쟁 사건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세칙 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쟁질서 파괴죄” 제1절 “가짜 불량 상품 생산판매죄”에서 규정한 형사범죄 사건과 제7절 “지식재산권 침해죄”에서 규정한 형사범죄 사건이 포함된다.

#### (2) 기층인민법원에서 접수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하여 상대적 집중관할을 실행, 상해시 푸둥신구

(浦东新区), 취후이구(徐汇区), 양푸구(杨浦区), 푸뉘구(普陀区) 인민법원에서 담당하여 심사 푸둥신구인민법원은 푸둥신구 내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쉬후이구인민법원은 쉬취이구, 창닝구(长宁区), 민항구, 평셴구(奉贤区), 송장구(松江区), 진산구(金山区) 내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양푸구인민법원은 양푸구, 황푸구, 홍커우구(虹口区), 바오산구(宝山区), 충밍구(崇明区) 내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푸튀구인민법원은 푸튀구, 징안구(静安区), 자딩구(嘉定区), 칭푸구(青浦区) 내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3) 상해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범위와 급별관할은 후고법[2016]35호 <상해시고급인민법원 본시(市) 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

(4) 기층인민법원 관할의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가짜 불량 상품 생산판매 등에 대해 내린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1심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지식재산권법원 관할의 1심 행정사건 제외)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은 다음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 설계, 기술상의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1심 행정사건. 2) 구(区) 이상 인민정부가 지식재산권, 부정경쟁과 관련하여 내린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1심 행정사건. 3) 기층인민법원이 내린 1심 지식재산권 행정판결,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은 상해지식재산권법원에서 내린 1심 지식재산권 행정판결,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관할한다.

지식재산권 행정신청 재심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5) 기층인민검찰원은 관할 내 본 공고 제1조 제1항에서 확정된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대해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관할권을 구비하지 않는 기층인민법원은 반드시 본 공고 제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을 구비하는 대응한 법원에 이

## 송

상해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세칙 제 3 장 제 1 절에서 규정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선고될 수 있는 가짜 불량 상품 생산판매죄를 위반한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상해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본 시에서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1 심 형사사건. 법> 세칙 제 3 장 제 7 절에서 규정한 다음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2)상해시공안국에서 입안수사 또는 처리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1 심 형사사건. 3)상해시공안국 수상공안국, 상해항공안국, 상해해사공안국, 장강해운공안국 상해지국, 상해시공안국 국제공항지국, 상해시공안국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총대에서 입안수사하는 본 시에서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1 심 형사사건, 상해세관 소속 공안기관에서 수사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1 심 형사사건.

상해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 내 기층인민법원에서 심사판결한 지식재산권 형사 항소사건 및 상해시인민검찰원 제 3 지원이 항소한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을 심사한다.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 내 상해시 제 3 중급인민법원에서 심사판결한 지식재산권 형사 항소사건 및 상해시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을 심사한다.

지식재산권 형사상고 사건은<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본 공고는 201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전에 이미 각 법원에서 접수한 지식재산권 사건, 행정 사건,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각 접수법원에서 심사판결한다.

## 국가지식재산권국 일부 특허요금의 징수중지 및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8 년 8 월 1 일부터 일부 특허요금에 대하여 징수중지 및 조정한다.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요금(국내부분)중의 특허등록비, 공고인쇄비, 서지사항변경비(특허대리기관, 대리인과의

위탁관계 변경), PCT(<특허협력조약>) 특허출원비용(국내단계부분)중의 전송비용에 대한 징수를 중지한다. 비용납부 마감일이 2018년 7월 31일(당일 포함)전의 상기 비용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요금감납방법>(재세[2016]78호)의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연차료 감납기간을 등록한 그해부터 6년이지만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018년 7월 31일(당일 포함)전에 이미 감납을 허락한 특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등록한 그해부터 6년내에 처한 사건에 대하여 연차료 감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등록한 그해부터 7년-9년 사이에 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해부터 계속하여 10년까지 연차료를 감납하며, 등록한 그해부터 10년 및 10년이상에 처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연차료를 감납하지 않는다.

(3) 심사청구단계에 진입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1차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마감일전에(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자진하여 출원을 철회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신도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되며 이와 동시에 구도표의 사용은 중지된다.

## 2018년 상반기 시장감독관리 업무 현저한 성과 획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성립이래 최초의 업무회의-전국 시장감독관리 업무 간담회는 7월 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Mao ZHANG는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의 간편화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국에 6개의 상표심사협력센터, 123개의 상표접수창구를 설립하여 상표등록 심사주기를 7개월좌우로 단축시켰다.

상반기 상표등록출원은 358.6만건으로 전년대비 57.5% 증가했다. 누적 유효등록상표는 1680.7만건이다. 특허등록주기는 안정적이며 22개월좌우이다. 발명특허,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량은 각각

75.1 만건, 109.2 만건과 32.4 만건이며 PCT 국제특허출원 접수량은 2.3 만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6 월말까지 국내 발명특허의 소유량은 147.5 만건이다.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를 규범화하고 지방유명상표 법규와 규칙의 폐지작업이 거의 완성되었다.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타격하는 특별행동을 펼쳤다. 5 월말까지 상표 관련 위법사건을 총 9329 건 조사처리한 것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집행 권리보호 특별행동을 펼쳐 특허 관련 위법사건을 1.19 만건 조사처리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했다.

2018 년 하반기 지식재산권 등록의 간편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하여, 그는 지식재산권 등록 간편화 개혁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사작업에서서의 현대정보기술 사용을 확대하고, 지능심사시스템 개발과 개선을 가속화하고, 심사질량과 효율을 제고시킨다. 금년말전에 전사회 대중들에게 상표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하고 상표등록 심사주기를 6 개월로 단축시킨다.